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8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정점식·박형수·김미애

정희용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고동진 · 강선영 · 김태호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,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 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3호 중 "경우"를 "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낚시어선업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,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도선사업 면허의 특례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로부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면 허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도선사업의 면허의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"시설기준"을 "시설기준(제3조의2에 따라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 중 "제3조의3제3항"을 "제3조의4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3조의3"을 "제3조의4"로 한다.

제12조제5항제6호 단서 중 "제3조의2"를 "제3조의3"으로 한다. 제2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3조의2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·관리 및 면허 범위의 준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적용배제) 이 법은 다음	제2조의2(적용배제)
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	
니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	3
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	
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	
하는 <u>경우</u> <u><단서 신설></u>	<u>경우</u> . <u>다만, 낚시어선</u>
	업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도선
	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낚시어선업자에 대한
	도선사업 면허의 특례) 「낚시
	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낚시
	어선업자로부터 제3조제1항 각
	호에 따라 면허신청을 받은 관
	할관청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춘
	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
	주민을 운송하도록 도선사업의
	면허의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
	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3조의2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)(생 략)

제3조의3(사업의 승계) (생략)

제4조의2(면허의 기준) ① 관할관 청은 유·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(생략)
- 2. 유·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·장비· 인력이 제4조의 <u>시설기준</u>에 적합할 것

② (생략)

제9조(행정처분) ① 관할관청은 유·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

제3조의3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
관광사업 등록 의제) (현행 제3
조의2와 같음)
제3조의4(사업의 승계) (현행 제3
조의3과 같음)
제4조의2(면허의 기준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시설기준
(제3조의2에 따라 면허를 하
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
른 시설기준을 말한다)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행정처분) ①

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제3조제1항, 제3조의3제3항, 제7조제1항, 제32조제1항, 제3 4조제1항 ·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고를 한 경우
- 7. · 8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3조의3에 따른 유·도선 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 의 유·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유·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,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는 유·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 7

 1. ~ 5. (현행과 같음) 6 <u>제3조의4제3항</u>
7. · 8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조의4
제12조(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

항 의무) ① ~ ④ (생 략)

- ⑤ 유선사업자, 선원,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(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. ~ 11. (생략)

제27조(개선명령 등) 관할관청은 제유·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·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항 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
승)
5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-10 7 Alo
<u>제3조의3</u> -
7. ~ 11. (현행과 같음)
27조(개선명령 등)
· 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제3조의2에 따른 시설기

	준 등의 유지・관리 및 면허
	범위의 준수
7. ~ 10. (생 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